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 2020년 5월 29일

O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제안이유

O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 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 설: 3건(별표 1)

<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신설 3건>

- (균형발전과)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1건)
- (기후대기과)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업무(2건)
 - ·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사무 신설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무 신설

○ 삭 제:1건(별표 1)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 1건>

- (균형발전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 업무
 -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삭제
- 그 밖의 개정사항 : 3건(별표 1)

<위임사무명 개정: 1건>

- (균형발전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
 -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근거 법조항 개정: 1건>

- (균형발전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사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8조, 제53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제88조,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

<부서 명칭변경: 1건>

- 수질관리과 → 수자원관리과

5.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균형발전과의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과 기후대기과의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무를 신설하고,

둘째, 균형발전과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 시설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부분을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삭 제하고.

셋째, 균형발전과의 위임사무명 1건과 근거 법조항 1건을 개정하고 수자원관리과의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 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